

December 08,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63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11. 30. ~ 12. 4.) -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2020. 11. 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세기본법: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② 소득세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 인하, ③ 종합부동산세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④ 개별소비세법: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ml당 370원) 현행 유지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기재부2]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2020. 12. 4. 기획재정부는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이 바라보는 現 경제상황 및 내년 전망(리스크), 2021년 경제정책방향, 투자·일자리 등을 위한 경제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정부-기업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산업의 체감적 성장동력화를 위한 펀드조성 등 재정금융지원, 협력모델 개발 등 생태계 구축, ② 5G 확산 가속화, 비대면산업 활성화, 그린스마트스쿨 건립 등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본격 추진 준비, ③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저탄소 신산업 육성, ④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투자저해 규제 완화 등 등이 있음

[참고자료]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산자부1]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2020. 11. 27.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가스터빈산업 글로벌 4강 도약” 비전을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국형 표준복합모델 구축을 위해 최대 15기 가스터빈 실증 → 4.4조원 시장창출 기대, ② 후속 가스터빈 모델 효율향상(63%→65%), 80MW 중형급 가스터빈 개발 추진('22~'25), '40년 까지 대형(300MW급) 수소전소 가스터빈 상용화 목표로 개발 착수, ③ 블레이드·베인·대형디스크 등 핵심 고온소재부품 역량 확보를 위한 R&D 병행, ④ 가스터빈산업 중소기업 집적지역인 부·울·경을 가스터빈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산자부2]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정책방향

2020. 11. 27.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① 분산에너지의 송배전 편익·변동성 편익 등을 지원하는 제도와 수도권 신규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 검토, ② 전력수급에 따른 조정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등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 추진, ③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및 공공 ESS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 전기차 충·방전, 열 저장 등 개발·확산, ④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신설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과기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2020. 12. 1.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주요 부당한 사례로는 ① 정당한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정부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 ②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을 발주기관 측이 임의로 활용, ③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 ④ 소프트웨어 등 용역결과물을 사업 수행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 배포 등이 있음

[참고자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참고자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과기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

2020. 12. 1.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선국 시설자의 전자파 강도 보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 신고사항(안 제53조 신설), ②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의 인가 절차(안 제53조의2제1항 신설), ③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의 인가 요건(안 제53조의2제2항 신설), ④ 무선국 시설자의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연장(안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이 있음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

2020. 12. 1. 자전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의 기준을 자전거로 범칙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법안

[기재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부는 2020. 12. 4. 부터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함. 주요 내용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①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②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인하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기재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등10인)」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정무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율체계 정비, 보안지원전담기관의 제도화 등을 마련하고자 함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9인)」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피해기업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히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따라서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산자위]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의원 등 11인)」

AI 국가전략 추진, 산업 지능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기술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이들 정책추진을 모두 아우르는 범 부처적 지원정책 추진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자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서 글로벌 밸류체인 변동에 대응한 국내공급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자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등12인)」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의 거래 및 납품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대한 압류금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법사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특별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복지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2인)」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시장의 재판매 사업자에 대하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교하여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알뜰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5G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T. +84-24-3245-4043

E. yjiseo@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